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4992 추심금
 원 고 완산개발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2-1
 대표이사 김재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피 고 이준권 (570221-1540620)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04 1312동 601호(중동 그린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선
 변 론 종 결 2013. 9. 3.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7,904,8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 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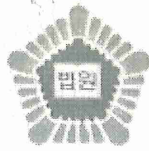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단체급식 용역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뉴그린병원'(구 명칭, 이하 '이 사건 병원')의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회사(이하 '원고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0. 11.경 의사인 김상권이 당시 까지 운영하여 오던 이 사건 병원의 물적 시설을 인수하여 명칭을 '뉴그린 요양병원'으로 변경한 뒤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김상권에 대한 채권

1) 원고 회사는 2011. 1. 15. 김상권과 사이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으면서 계약 담보금으로 김상권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위탁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외에 2011. 2. 15.부터 2011. 3. 31.까지 김상권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와 김상권은 2011. 3. 31. 위 담보금반환 채권과 대여금채권 합계 2억 9,0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원고 회사가 김상권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행정이사였던 안순철은 김상권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1. 1. 경부터 2011. 8. 경까지 김상권이 부담하기로 한 식재료 대금을 김상권을 위하여 대위변제해 주었고, 그 금액이 53,483,325원에 이르자 원고



회사와 김상권은 2011. 9. 16. 위 대위변제금 53,483,325원에 관하여, 이를 원고 회사가 김상권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안순철은 당시 김상권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주채무자 김상권과 연대보증인 안순철을 상대로 하여 먼저 위 2011. 3. 31.자 대여금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3086호로 신청하여 2011. 5. 3.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역시 김상권, 안순철을 상대로 하여 위 2011. 9. 16.자 대여금 53,483,3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258호로 신청하여 2011. 10. 5.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

다. 김상권과 피고 사이의 병원양도양수계약

1) 김상권과 피고는 2011. 10. 11. 김상권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이 사건 병원 내의 모든 시설물, 각종 가입권, 의료장비, 각종 임차보증금, 병원 운영에 이용된 시설물에 대한 권리 일체, 계약일 현재 병원에 있는 소모품 등 모든 물품과 당시 입원 환자의 입원 기록 기타 서류 일체 등)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김상권과 피고는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인수할 병원 운영 관련 채무의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김상권이 고용한 의사 포함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김상권과 피고는 그들의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에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이후에 위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상권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등 종류를 불문한 제반 금원 지급 청구권 중 합계 387,904,821원(331,315,068원 + 56,589,753원)에 관하여 2012. 1. 30.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283호, 12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원고 회사는 안순철을 상대로도 같은 금액을 집행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6, 갑 9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당시, 김상권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상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김상권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원고 회사의 김상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당시 김상권에게 양도대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김상권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양도대금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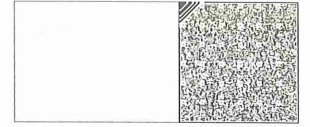
중 387,904,8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주장(채무 인수 약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당시 첨부한 인수채무 목록에 관하여 원·피고가 서로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김상권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 중, 갑 14호증(확인각서)의 기재는, 안순철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팩스로 보낸 문서로서 피고가 김상권, 안순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증인 안순철의 증언은,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당시 김상권 측은 갑 16호증의 2(대출 및 미지급현황)에 기재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를 피고가 원고 회사에 별도로 협의하겠으니 계약서에 첨부되는 인수채무 목록에서는 제외하자고 요구하여 최종 계약서인 갑 11호증의 2(병원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채무 목록에서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빠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바, 안순철은 피고가 김상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경우 안순철 본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어{실제로 안순철은 이 사건 병원 영업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김상권과 안순철에 대하여 자신들의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자 갑 11호증의 2를 복사하여 주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라고 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을 2호증~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16호증의 2(대출 및 미지급현황)의 기재는 이 사건 병원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의 목록(2011. 9. 28. 기준)인바 그중에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 337,714,853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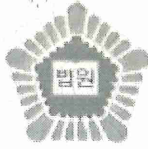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채무 목록이 김상권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계약서에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은 다툼이 없어(원고 회사가 최종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11호증의 2나 피고가 최종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을 1호증 어디에도 첨부되지 아니한 채무 목록으로, 김상권이나 피고의 도장이 날인 또는 간인되어 있지 않다) 그 기재만으로 피고의 채무 인수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18호증(합의각서)의 기재는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김선옥과 피고 사이에서, 김선옥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노치영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고 김선옥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전세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등의 내용인바, 그 중 제4항에서는 '병원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한 현재 시점 이전의 병원 채무는 피고가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김상권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 김선옥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 약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김상권 또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서 김상권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 예비적 주장(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이 상법 제42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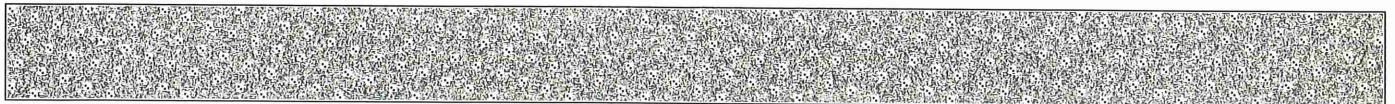
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처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 당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문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었던 점이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이후 기존 직원의 대부분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의 각종 물적 시설을 모두 양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상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제2 예비적 주장(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김상권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에 따른 9억 원의 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바,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안순철의 증언은, 피고가 김상권에게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안순철에게 3억 원 및 6억 원으로 된 각 차용증(갑 12호증의 1, 2)을 피고와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이중배의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이나, 원고 회사나 안순철이 이 사건 병원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최종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11호증의 2에는 양도대금 9억 원에 관한 기재가 달리 없는 점(양도대금은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인바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순철이 피고와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외에 달리 양도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제2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예지희



판사

노연주

노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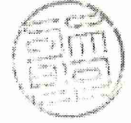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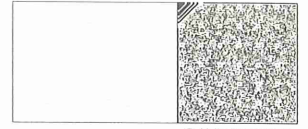


판사

이유빈

이 유 빈





정본입니다.

2013.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정귀용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